

-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예탁하는 것이 은행선정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

2. 주요급자

- 노인복지기금의 예탁방법 결정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”를 “안정성 및 이율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기금의운용관리)① (생략)		제3조(기금의운용관리)①(현행과 같은)		
② 기금은 은행법, 농업협동조합법,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채신부 산하기관등에서 <u>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</u>		②		
				
		 <u>안정성 및 이율등</u>		
		<u>을 감안하여 예탁한다.</u>		
③~④ (생략)		③~④ (현행과 같은)		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경과

1. 심사일정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95. 5. 12

다. 상정일자 : 95. 5. 22

라. 의결일자 : 95. 5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사회과장

나. 내 용

-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틀 → 이율 및 안정성등을 감안하여로 개정

-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

-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

-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

-분임기금출납명령관 → 분임기금운용관

-분임기금 출납공무원 → 분임기금 출납원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지방재정법 시행령이 '93. 9. 23개정되었는데 지금에와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?	너무 늦게 개정하게 되어 죄송함

4. 토론요지 :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토론 생략

5. 수정안 내용 : 해당없음

6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☐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

의안번호	384
의 결	95. 5. 30
년 월 일	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개정구분 : 부분개정

□ 개정이유

- 현행 장학기금운영조례상 기금예치시 높은 이율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어 기금관리의 안정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
-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[대통령령제13981호('93. 9. 23)]으로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법령과 부합토록 하기 위한.

□ 주요골자

-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→ 이율 및 안정성등을 감안하여(안제 8 조)
-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, 기금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(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)
- 분입기금출납명령관 → 분입기금운용관, 분입기금출납공무원 → 분입기금출납원(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)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 제2항중 “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”를 “이율 및 안정성등을 감안하여”로 한다.

제 9 조 제1항및 제2항중 “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기금운용관”으로, “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기금출납원”으로 한다.

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“분입기금출납명령관”을 “분입기금운용관”으로, “분입기금출납공무원”을 “분입기금출납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 8 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①(생략)		제8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①(현행과 같음)		
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		②		이율과 안정성등을 감안하여.....

제 9 조(기금운용관)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
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
공무원을 둔다.

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과장, 기금출
납공무원은 시의 사회계장으로 한다.

③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에
분임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을
둔다.

④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,
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사회계장으로 한
다.

제 9 조(기금운용관)①
.....기금운용관.....기금
출납원

② 기금운용관.....기금
출납원.....

③
분임기금운용관.....분임기금출납원.....

④ 분임기금운용관.....
분임기금출납원.....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□ 심사결과

1. 심사일정

- 가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95. 5. 12
- 다. 상정일자 : 95. 5. 22
- 라. 의결일자 : 95. 5. 22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가정복지과장
- 나. 내 용
 - 기금출납명령관 → 기금운용관
 - 기금분임운용관 → 신설
 - 출납공무원 → 기금출납원
 - 분임기금출납명령관 → 분임기금운용관
 - 분임기금출납공무원 → 분임기금출납원